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8. 12 선고 2021가단23770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7. 15.

판 결 선 고 2022. 8. 12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2019. 4. 20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8,727,272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8,727,2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황순교

별지